

제 431 호

1974. 2.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이 영구보존본은 서울특별시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1974. 2. 9.
 서울특별시 시판가격

◎ 조 례

제 816 호 :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제 817 호 : 서울특별시 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칙

제 1341호 : 서울특별시 임시 고용원 규정중개정규칙 18

제 1342호 :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21

제 1343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의양정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21

◎ 교 시

제 3 호 :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발소고시 30

제 12 호 : 도시계획 (전기 공급설비: 변전소) 시설결정과 지적승인 32

제 13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2

제 14 호 :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결정과 지적승인 33

제 15 호 :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승인고시 33

제 16 호 :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결정과 지적승인 34

◎ 공 고

제 19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변경공고 35

제 23 호 : 환지 처분공고 (망우토지 구획정리지구) 35

제 24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36

제 26 호 : 쓰레기특별정소제외 (비수거) 지역공고 36

◎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무총리의 승인·인준을 얻은 서울특별시도로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1974 2.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 서울특별시조례제 816 호

서울특별시도로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조례제 817 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천 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정 1971. 2. 17 조례제 658 호

개정 1974 2. 7 조례제 817 호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중 "부과당시의 토지의시가" 다음에 "(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한다)" 를 삽입한다.

제 9 조 중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담금한도액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부과의시기등) ①부과의 토지가액조사 및 부과는 공사준공일로부터 9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을 분할 부과하거나 또는 공사를 수개공구로 나누어 부과 징수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천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학교군) 학교군 및 중학구수는 10 학군 1 학구로 하고, 학교군별, 중학구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별

표와 같다.

별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1 학군 도봉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노원"을 장위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월곡"을 각각 추가한다.
- 2. 2 학군 전농지역 중학교 남자란중 "농대병설"을 "전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농지역중학교 여자란에 "전농"을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명신"을 면목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무동", "중랑"을 전농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석관" "신답"을 각각 추가한다.
- 3. 3 학군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응봉"을 성수, 화양 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용마", "성수"를 각각 추가하고 중구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의 "일신"을 각각 삭제한다.
- 4. 5 학군 중학교 남자란에 "영동"을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논현", "신동"을 각각 추가한다.
- 5. 6 학군 한남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의 "신동"을 각각 삭제한다.

- 6. 7 학군시흥, 대림지역 중학교 남자란중 "대림"을 "신림"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흥, 대림지역 국민학교 남자란의 영일, 구로남, 동구로를 삭제하고 당산구로지역 국민학교 남자란에 영일, 구로남, 동구로를 추가한다.
 - 7. 8 학군 마포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중 "문화"를 "예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연희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수안" "연가"를 불광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역촌", "신도" "북한산"을 각각 추가하며,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의 "서대문"을 각각 삭제한다.
 - 8. 오류학구를 9 학군으로 변경하고 중학교 남자란에 "우신"을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세곡"을 각각 추가한다.
 - 9. 화곡학구를 10 학군으로 변경하고 중학교 남자란에 "화곡"을 중학교 여자란에 "공항"을 각각 추가한다.
- 부 칙
- 이 조에는 1974 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38

학군내 지역별중학교 및 국민학교일람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1 학군	공동지역	삼 선 등 성 교 명 보 성 용 문 경 신 동국사대부속	혜 화 창 경 돈 암 효 제 삼 선 매 원 정 덕 우 촌 은 석 안 암 성신사대부속	성 신 정 신 한 성 성신사대부속	혜 화 창 경 돈 암 효 제 삼 선 매 원 정 덕 우 촌 은 석 안 암 성신사대부속	
	정능지역	홍 익 교 려	청 덕 승 덕 성 북 홍 익 북	동 구 교 려	송 덕 청 덕 성 북 홍 익 북	고려중 (남녀공학)
	도봉지역	신 일 영 훈 서 라 창 동	도 봉 창 동 화 계 수 유	도 봉 수 유 정 의 영 훈	도 봉 창 동 화 계 수 유	창동(남녀공학) 영훈(')
		7 교	11 교	4 교	11 교	
		2 교	4 교	2 교	4 교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수 유 5 교	우 이 송 천 삼 양 미 아 영 훈 한국신병설 신 창 노 원 12 교	성 암 창 등 6 교	우 이 송 천 삼 양 미 아 영 훈 신 창 한국신병설 노 원 12 교	
	장위 지역	염 광 광 운 남 대 문 문 송 덕 4 교	송 인 송 례 창 위 창 계 월 국 송 국 월 국 6 교	염 광 창 문 2 교	송 례 장 위 월 계 송 인 송 국 송 국 6 교	염 광 (남녀공학)
	계	18 교	33 교	14 교	33 교	
2 학군	공동지역	대 광 성 일 동 대 문 문 서울사대부속 광 신 경 회 4 교	창 송 송 동 용 동 용 종 종 풍 6 교	동 덕 경 회 정 화 2 교	창 송 송 동 용 동 용 종 종 풍 6 교	

38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신 설 동 홍 능 홍 파 청 량 대 광 경 회 서 을 삼 명 욱 신		신 설 동 홍 능 홍 파 청 량 경 회 대 광 서 을 삼 명 욱 · 신	
		6 교	14 교	3 교	14 교	
	면목지역	장 중 면 중	안 화 목 금 중 화 태 강 삼 중 목	면 중 금 중 화 태 강 삼 중 목	목 화 성 곡 랑 삼 욕 랑 동	
		4 교	8 교	5 교	8 교	
	전농지역	전 청 회	농 랑 경	전 전 담 전 회	농 동 리 곡 경	
				동 대 문 덕 회 전	문 화 경 농	
				전 전 담 전 회	농 동 리 곡 경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이 문 신 답 석 관		이 문 신 답 석 관	
		3 교	8 교	4 교	8 교	
	계	13 교	30 교	12 교	30 교	
3 학군	공동지역	덕 수 한 양 광 회 성 동 배 명 한 영	장 중 광 회 서울사대부속 홍 인 무 학 동 명 행 당 사 근 한 양 교 대 부속 응 봉	무 학 한 양 행 당 서울사대부속	장 중 광 회 서울사대부속 홍 인 동 명 무 학 행 당 사 근 한 양 서울교대부속 응 봉	
		6 교	11 교	4 교	11 교	
	중구지역	배 동 재 북	남 대 문 남 산 회 영 명 지 명 리 라 리 계 성	계 승 의	중 무 남 대 문 남 산 회 영 명 지 명 리 라	

28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송 의 동 북 충 무 2 교 9 교		계 송 성 동 의 동 북 2 교 9 교	
	금호지역	장 충 대 경 2 교	금 호 금 옥 옥 수 동 산 금 북 청 구 6 교	옥 수 금 호 2 교	금 호 금 옥 옥 수 동 산 금 북 청 구 6 교	
	성수화양 지 역	수도사대부속 성 수 진 국 3 교	경 동 언 북 장 안 자 양 광 장 신 천 수도사대부속 성 동 용 마 성 수 10 교	수도사대부속 성 수 명 성 3 교	경 동 언 북 장 안 자 양 광 장 신 천 수도사대부속 성 동 용 마 성 수 10 교	수도사대부속 (남여공학)
	계	13 교	36 교	11 교	36 교	
4 학군	천호지역	천 호 동 신 2 교	구 천 천 호 2 교	천 호 영 파 2 교	구 천 천 호 2 교	천 호 중 (남여공학)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거 여 경기도서부 성 내 2 교 5 교		거 여 경기도서부 성 내 2 교 5 교	
	송파지역	성 문 1 교	왕 북 중 대 대 왕 3 교	성 문 1 교	왕 북 중 대 대 왕 3 교	성 문 (남여공학)
	계	3 교	8 교	3 교	8 교	
5 학군		영 동 1 교	신 중 연 남 연 주 신 동 논 현 5 교	영 동 1 교	신 중 연 남 연 주 신 동 논 현 5 교	
	계	1 교	5 교	1 교	5 교	
6 학군	공동지역	송 용 선 산 한 용 신 산	후 삼 삼 청 금 금 남 남 한 한 신 신 상 상 신 명 산 광	용 산 신 광 상 명	청 금 남 남 한 용 신 신 성 성 효 후	파 양 정 정 강 강 산 산 광 광 심 심 창 창 암 암

38
9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5 교	효 용 창 산 11 교	3 교	삼 상 용 광 명 산 12 교	
	한남지역	단 국 산 오 2 교	용 한 서 보 이 안 남 고 광 원 5 교	보 성 1 교	용 한 서 보 이 안 남 고 광 원 5 교	
	흑석지역	동 양 중 대 부 속 상 도 3 교	남 은 본 강 명 수 대 중 앙 대 학 부 속 사 당 7 교	중 대 부 속 상 도 2 교	남 은 본 강 명 수 대 중 앙 대 학 부 속 사 당 7 교	
	강남지역	영 등 포 봉 친 노 량 진 도 천 립 친 악 화 관 영	노 량 진 도 천 립 친 악 화 관 영	강 신 봉 친 남 립 친	노 량 진 도 천 립 친 악 화 관 영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영 본		영 본	
		2 교	8 교	3 교	8 교	
	계	12 교	31 교	9 교	32 교	
7 학군	공동지역	장 훈 성 남 강 남	우 신 도 림 영 신 대 영 영 신 영 남 영 동 삼 육재활	영 등 포 대 방	우 신 도 림 영 신 대 영 영 신 영 남 영 동 삼 육재활	
		3 교	9 교	2 교	9 교	
	당산,구로 지 역	영 도 당 산	당 산 당 중 구 로 영 등 포 영 일 구 토 남 동 구 로	도 림 봉 영	당 산 당 중 구 로 영 등 포 영 일 구 토 남 동 구 로	
		2 교	7 교	2 교	7 교	
	시흥,대림 지 역	동 일 신 림 강 서 남 강	문 창 탑 동 문 성 문 시	동 일 문 대 대 강	문 창 동 동 문 성 문 시	동 일 중 (남여공학)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4 교	4 교	4 교	4 교	
	여 의 도 계	여 의 도 10 교	여 의 도 21 교	여 의 도 9 교	여 의 도 21 교	
8 학군	공동지역	중 앙 중 동 수 송 수 휘 대 대	덕 수 수 송 미 동 금 화 교 동 재 농	성 정 숙 명 덕 성 풍 문 진 명	덕 수 수 송 미 동 금 화 교 동 재 농	
		5 교	6 교	5 교	6 교	
	세 검 정 지 역	청 운 보 인	매 능 칭 운 세 검 경 북 상명사대부속	배 화 상명사대부속	매 동 칭 운 세 검 경 북 상명사대부속	
	2 교	5 교	2 교	5 교		
	불광지역	대 신 영 천 대 성 인 창	독 립 문 안 산 안 왕 홍 제 불 광 대 조 갈 현 은 해 선 일	동 명 예 일 문 영 선 일 선 원	독 립 문 안 산 안 왕 홍 제 불 광 대 조 갈 현 은 해 선 일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고 경 역 신 복 한 은 기 존 도 산		고 경 은 역 신 복 한 은 기 평 존 도 산		
		4 교	14 교	5 교	15 교		
	연 회 지 역	연 회 지 암 은 총 영 연	응 수 은 총 북 연 연 수	암 색 평 암 좌 회 가 안	연 회 지 암 총 연 북 연 수	암 색 암 회 좌 가 안 (남) (남) 중 학 공 회 (남) 학 알 공 (남) 학 (남)	
		5 교	8 교	3 교	7 교		
	신 촌 지 역	한 이 대 부 속 승 광 경	성 북 추 이 대 부 속 대 청 창 서 흥 성	성 계 속 신 천 서 교 의 산	중 금 이 대 부 속 흥 성	앙 반 추 이 대 부 속 익 산 아 창 창 서	성 이 대 부 속 (남 여 공 학)

304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재 활 원 서 강		홍 익 성 산 재 활 원 서 강	
		5 교	11 교	5 교	12 교	
	마포지역	양 정 봉 래 균 명 아 현 경 서 한 서 수 도 소 의 배 문 예 일 동 도 용 강 마 포 공 덕 유 신 석 신 마 석 한 국 구 포 화	장 덕 봉 래 마 포 예 일 서 울 한 소 의 덕 강 석 석 석 포 포	3 교	10 교	
	계	28	55	23	55	
9 학군		유 한 오 류 우 신 고 척 개 개 봉 세 세 곡	오 류 척 봉 곡	오 류 고 개 세 곡	4 교	
	계	2 교	4 교	1 교	4 교	
10 학군		공 항 개 화 화 곡 송 정	화 곡 개 화 공 항 송 정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10학군			양 천 화 곡 염 창 신 정 오 곡		양 천 화 곡 염 창 신 정 오 곡	
	계	2 교	7 교	2 교	7 교	
상계학구		재 현	상 계 연 촌 신 상 계	상 계	상 계 연 촌 신 상 계	
	계	1 교	3 교	1 교	3 교	
	총 계	103 교	233 교	86 교	234 교	

학 군 별 중 학교 현황

학 군 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남	여	남	여	남	여	
1 학 군			4	3	14	11	32
2 " "	1		8	3	4	9	25
3 " "		1	4	5	9	5	24
4 " "			1	1	2	2	6
5 " "			1	1			2
6 " "			7	5	5	4	21
7 " "			5	6	5	3	19
8 " "			5	4	23	19	51
9 " "				1	2		3
10 " "			1	2	1		4
상 계 "				1	1		2
계	1	1	36	32	66	53	189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제 1341 호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규정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2. 6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임시고용원 보수지급기준표

등급	보수의한계	직	종
1	11,000	정비원, 차량정리원	
2	12,000	사환, 전달부	
3	13,000	전달부	
4	14,000	정비원	
5	15,000	전달부	
6	16,000	잡 부	
7	17,000	기관수	
8	18,000	안내원, 타자원, 기관수, 경리원, 감사원, 관리원, 경비원, 미용사, 수위, 청소원, 시험원, 원예사, 전달부, 직공, 정비원, 잡부, 전공, 청부, 취사부, 행정보조원	
9	19,000	기사, 경비원, 사감, 차량정비원, 행정보조원, 전공, 청부, 타자원, 경리원, 교환원, 감시원, 수위, 시험원, 운전원	
10	20,000	감시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민원보조원, 전공, 행정보조원	
11	21,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기제공, 경비원, 보조, 수위, 시험원, 원예사, 안내원, 의료요원, 잡부, 행정보조원	
12	22,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감시원, 가족계획요원, 기제공, 보조, 사감, 시험원, 정비원, 전공, 타자원, 행정보조원	

등 급	보수의한계	직	종
13	23,000	기사, 경리원, 관리원	
14	24,000	기사, 기계공, 운전원, 조철수, 직공, 정비원, 전공, 행정 보조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15	25,000	기관수, 기사, 결핵관리요원, 기계공, 관리원, 상담원, 원 예사, 아동복지지도원, 운전원, 직공, 전공, 행정보조원	
16	26,000	기사, 간호원, 가족계획요원,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전공	
17	27,000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18	28,000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정비원	
19	29,000	안내원, 직공, 청원경찰	
20	30,000	가족계획요원	
21	31,000	기관수, 기계공, 직공, 전공, 축산원, 행정보조원	
22	32,000	기계공	
23	33,000	교도원, 기계공, 사서요원, 안내원	
24	34,000	운동장지도원, 행정보조원	
25	35,000	구호협회간사, 상담원, 조철수, 직공, 정비원, 전문위원	
26	36,000	기사, 시험원, 운전원, 부랑아전문직원, 직공, 정비원, 전 문위원, 행정보조원	
27	37,000	교도원,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28	38,000	기 사	
29	39,000	기 사	
30	40,000	연예사	
31	41,000	정비원, 기관수, 기계공, 전공	
32	42,000	기관수, 전공	
33	43,000	연예사	
34	44,000	기 사	
35	45,000	교도원, 기사, 연예사, 전공	

등 급	보 수의 한 계	직 종
36	46,000	의 료 요 원
37	47,000	연 예 사
38	48,000	연 예 사, 전 문 위 원
39	49,000	기 사, 정 비 원
40	50,000	기 관 수, 기 사, 기 제 공, 전 문 위 원, 전 공
41	51,000	교 도 원, 연 예 사, 정 비 원
42	52,000	정 비 원
43	53,000	정 비 원
44	54,000	수 의 사, 연 예 사
45	55,000	기 사
46	56,000	기 사
47	57,000	연 예 사
48	60,000	전 공
49	61,000	운 전 원, 정 비 원
50	62,000	연 예 사
51	63,000	전 공
52	64,000	승 부 감 독
53	65,000	연 예 사
54	68,000	연 예 사
55	70,000	의 사
56	71,000	의 사
57	82,000	의 사
58	87,000	연 예 사
59	90,000	연 예 사
60	110,000	연 예 사
61	113,000	의 사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42호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1103 호(70.9.28)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4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동조에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감독자의 감독불충분에 대한 징계는 별표 2에 의한다.

④징계의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8 조제 2 항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 107 조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제 4 조 본문중 "별표"를 "별표 1"의 "로" 하고 동조제 1 호중 "(3 개 항목이상)" 을 "(2 개 항목이상)" 으로서 하며, 동조 제 2 호중 "경합은 감봉" 다음에 " 3 월이상 " 을 삽입한다.

제 6 조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6 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4 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 2 조제 1 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제 양 정 에 관 한 기 준			
구 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 면	감 봉	견 책	
공 통 사 항	1. 복부조례위반				
	가. 무제결근			월 3일이 상은 견책이 상	2 일 훈계
	나. 지참, 무단이석			"	1 회 경고, 2 회 훈계
	다. 출장미귀 근무태도 불량			"	월 2 회 훈계
	라. 출근부미날인			"	
	마. 출근부 내리날인			월 2 회 이 상은 견책이 상	1 회 훈계
	바. 당숙직 불이행			견 책 이 상	
	2. 근무자세 불충실				
	가. 민원서류 및 기한문서처리 지연 (고의)			견 책 이 상	
	나. 직무유기		감봉이상		
	다. 민원인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친절로 불의			견 책 이 상	
	3. 품위손상				
	가. 사기, 절도, 강도, 강간	0			
	나. 도 박		감봉이상		
	다. 축 첩	0			사실상동거
라. 음주추태		감봉이상			
마. 고급유홍장 (1 종업소) 출입			견 책 이 상		
바. 폭력, 가혹행위			견 책 이 상		
사. 직무와 관련하여 지실한 비밀누설		감봉이상	경미한대의비 문서에 대한 누설은 견책		
야. 소정절차를 거침없이 타직 겸직			견 책 이 상		

구 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 면	감 봉	견 책	
	자. 부장부단정			주의 2 회 이 상 견책이 상	
	차. 기타 품위손상행위 (위계질서 문란등)				
	4.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				
	가.公款(물) 횡령	0			
	나.公款유용		감봉이 상		
	다.공과금의 위법 부당부과 및 감면		"		
	5. 증 수 퇴				
	가. 사전수퇴	0			
	나. 사후수퇴	0			
	다. 금품전달		"		
	6. 문서에 관한 위법 및 부당행위				
	가. 공문서위조, 변조	0			
	나. 공문서파기	고 의	중대한과실	과 실	
	다. 공문서망실	"	"	"	
	라. 허위문서등 및 부명서작성 및 동행사		감봉이 상		정상에따라 적의 적용
	마. 공정증서 불실기재	0	"		
	바. 관인의 부정사용	0			
	7. 직권남용				
	가.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권리행사 방해		"		
	나. 직명사칭		"		
	8. 행정운영상의 위법부당				
	가. 직무 명령위반			견책이 상	

구 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 면	감 봉	견 책	
	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노조활동등)	0			
	다. 기타 중대한 과오			견책이상	
	9. 회계 관리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집행			"	
	나. 물품 및 공사의 부당분해발주		감봉이상		
	다. 위법, 부당한계약 및 증서발행		"		
	라. 위약금의 부징수 및 기타 손실초래		"		
	마. 예산의 위법 부당집행			"	
	바. 공과금의 부당관리			"	
	사. 기타 회계상의 부정			"	
	10. 물품, 재산 및 시설물관리 부적정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시 설물 훼손			"	
	나. 물품재산의 망실		"		
	다. 관용차 남용		"		
	11. 공사의 집행 및 감독부적정				
	가. 공사감독일지 불 비치		"		
	나. 중요공사 부당 준공검사		"		
	다. 공사장 무단이설			"	
	라. 설계과다	100만원 이 상	10만원 - 100만원	10만원 이 하	
	마. 설계상 과오			견책이상	
	바. 기타 공사집행상의 부정행위			"	

38
23

구 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파 면	감 룡	견 책	
분야 별	1. 창 구 행 정 가. 민원중개인 및 대서업자를 통한 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의 부당접수) 나. 민원서류 사전 가접수 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차에 걸친 보완서류 요구 2. 세 무 행 정 가. 과 세 누 락 나. 과 세 지 연 ○ 유흥음식세 업종적용의 부적정 ○ 정액 지수제상의 고정지수 결정의 부적정 ○ 업황도결정의 부적정 ○ 위장 휴·폐업소 은폐 ○ 과세물건조사 및 지압조사의 불철저 ○ 세무실사 불철저 다. 제대장처리의 불철저 라. 채납처리 태만 마. 납세담보미설정 및 부적정 바. 자동차세 등록압류촉탁태만 사. 지적등조본 발행의 부적정 아. 가옥대장 불실등재		감룡이상		
		○		견책이상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감 룡	견 책	
	3. 보건위생행정				
	가. 유흥업소 및 환경업소등 제허가 부적정		감룡이상		
	나. 업태위반업소 조치태만			견책이상	
	다. 무허가업소 단속 불철저			"	
	라. 부정식품, 의약품단속불철저			"	
	마. 업소 감시업무 소홀			"	
	바. 마약취급 의료업자 감시소홀		"		
	사.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물의야기		"		
	4. 청 소				
	가. 일반오물수거료 고지누락			"	
	나. 다량수거처 지정누락		"		
	다. 수거량 허위보고		"		임시적해직
	라. 봉사료 강요	○			"
	마. 수수료 수입금관리 불철저		"		
	5. 건축 및 주택				
	가. 위법, 부당 건축허가	○			
	나. 위법, 부당 준공검사	○			
	다. 허위복명서 작성 허가 준 공처리	○			
	라. 준공검사 불철저		"		
	마. 중간검사 불철저		"		
	바. 형식적 시정지시 반복		"		
	사. 위법전물 적발태만 (주택)		"		

38 25

<별표 2>

감독자 문책 기준

구	분	계장급	과장급	비고
직접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견책 상당의 징계사유 발생된 경우	3명	훈계		
	5명 이하	견책	훈계	
	6명 이상	감봉	견책	
직접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감봉 상당의 징계사유 발생된 경우	3명	견책	훈계	
	5명 이하	감봉	견책	
	6명 이상	파면	감봉	
직접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파면 상당의 징계사유 발생된 경우	3명	감봉	견책	
	5명 이하	파면	감봉	
	6명 이상	파면	감봉	

- ※
- 직접 감독하에 있는 직원수가 20명이상일 경우는 위 기준의 3분의 1을 증가한 수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율의 단수는 1인으로 한다
 - 국장급 이상에 대한 문책은 문책사안에 따라 조정 적용
 - 견책, 감봉, 파면 등이 경합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정 적용
 - 훈계자는 시말서 징취
 - 통산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사료성분말소고시제 3 호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21-1	대원사료상사	종남동 355-1	강익현	배합사료	씨돼지용배합사료	생후대략9개월이되는씨돼지
-2	"	"	"	"	산란말기용배합사료	초산후대략 36 주이상
-3	"	"	"	"	부러일러 후기	부화후대략4 주이상(육성용하이)
-4	"	"	"	"	부러일러 전기	부화후대략 4 주까지
-5	"	"	"	"	젖소용배합사료	생후대략 18 개월이상(1호)
-6	"	"	"	"	중병아리배합사료	부화후대략 7 ~ 12 주
-7	"	"	"	"	어린병아리	부화 후대략 6 주까지
-8	"	"	"	"	산란초기용	초산후부터대략20주까지(산란초기)
-9	"	"	"	"	"	(산란용중계)
-10	"	"	"	"	큰병아리 배합사료	부화 후대략13주~초산까지(전기)
-11	"	"	"	"	식물성박류기초배합사료	식물성박류기초배합사료
-12	"	"	"	"	어분기초 배합사료	어분기초배합사료
-13	"	"	"	"	산란중기용배합사료	초산후대략 21 ~ 35 주
-14	"	"	"	"	젖메기 돼지배합사료	생 후대략 2 개월까지
-15	"	"	"	"	어린 돼지 배합사료	생 후대략 2 ~ 4 개월
-16	"	"	"	"	중돼지 배합사료	생 후대략 4 월 이상의 비육돈 및 8월까지 씨돼지
-17	"	"	"	"	농축배합사료	농 축 배 합 사 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8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사항이 말소되었기 고시한다.

사 료 성 분				유효 가 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 단 백 질	조 지 방	조 섬 유	조 회 분		
12.0 %이상	2.0 %이상	11.0 %이하	11.0 %이하	72.4.30 ~ 74.4.29	74.2.5자말소
14.0 "	2.0 "	8.0 "	13.0 "	"	"
16.0 "	2.5 "	6.0 "	10.0 "	"	"
19.0 "	2.5 "	6.0 "	9.0 "	"	"
13.0 "	2.0 "	13.0 "	12.0 "	"	"
16.0 "	2.5 "	7.0 "	10.0 "	"	"
19.0 "	2.5 "	6.0 "	9.0 "	"	"
15.0 "	2.0 "	7.0 "	13.0 "	72.6.22 74.6.21	"
15.0 "	2.0 "	7.0 "	13.0 "	"	"
12.0 "	2.5 "	7.5 "	10.0 "	"	"
35.0 "	3.0 "	8.0 "	7.0 "	"	"
50.0 "	5.0 "	2.5 "	20.0 "	"	"
14.5 "	2.0 "	7.0 "	13.0 "	73.8.10 75.9.13	"
18.0 "	2.0 "	6.0 "	9.0 "	73.3.26 75.3.25	"
15.0 "	2.0 "	7.0 "	9.0 "	"	"
12.0 "	2.0 "	8.0 "	10.0 "	"	"
16.0 "	2.0 "	4.5 "	13.0 "	73.5.3 75.5.6	"

◎서울특별시고시제 12호

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변전소)
시설결정과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

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서대문구 순화동 212-1	1,070 (325 평)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시민봉사실에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13호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적승인변경을 다음과같이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장시설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특별시장	성동구성수동 2 가 335-47 부근	1,338 평	변경 전
"	" 339-5 "	1,289 평	변경 후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 결정과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6 호 (74.1.5)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5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조서

용도 및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목동분뇨 종말처리장	신도림동 유수지	신도림동 320번지일대	47,413	

나. 가로신설 및 폐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폐지	소로	3		6	458	신도림동 276-1	신도림동 309-3
"	"	2		8	260	" 322-2	" 300-1
"	"	2		8	40	" 301	" 304-1
신설	"	2		8	480	" 312	" 271-34

별첨 : 도면은 당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 호
 재개발사업시행자지정승인고시
 1. 건설부 고시 제 368 호 (73.9.6)
 로 재개발 구역이 결정고시된 소공
 제 1 지구의 2 개지구의 재개발사업시
 행자 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4. 2. 6
 서울특별시 장

2. 고 시 내 용

지 구 명	지정 면적	승 인 내 용			비고
		공구명	면 적	시 행 자	
소 공 재개발지구	13,220 (4,000명)	소 공 1 지구	4,630 (1,400명)	태평개발주식회사 종로구수송동 28의 2 남 공 연	
태평로 2 가 재개발지구	31,400 (9,500명)	태평로2가 2 지 구	7,400 (2,240명)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	
남대문로 3 가 재개발지구	9,400 (2,800명)	남대문로3가 2 지 구	3,000 (900명)	기독교 감리회 유 지 재 단	

◎ 서울특별시고시제 16호

도시계획(유수지)시설변경결정과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유수지)시설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6 호 (74.1.5) 의 권
 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74. 2. 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유수지)시설변경조서

시 설 명	위 치	변 경 적			비고
		기 점	변 경	변 경 후	
용산제 1 유수지	용산구한강로3가 33번지주변	25,022	986	26,008	
용산제 2 유수지	" 2번지주변	3,603	952	4,555	
용산제 4 유수지	" 신계동 42 원호 3가 53) 주변	5,381	1,740	7,130	

별첨 :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변경 공고

공고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4. 1. 9

서울특별시 공고 제 3 호 (74. 1. 9) 로

서울특별시 장

1. 시험 구분

면허종류 및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1종보통	1. 시험 실시일시 10일 전부터 시험 실시 1일 전 12시까지 2. 단, 공휴일은 제외	3. 9월의 첫째 화요일	서울특별시면허시험장 (용산구 한남동 소재)
특수	위와 같음	3. 9월의 네째 목요일	
2종소형	"	3. 9월의 둘째 목요일	
1종대형	"	4. 10월의 첫째 화요일	
2종보통	"	4. 10월의 셋째 화요일	
2종원동기	"	매주 금요일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 호

환지처분공고 (망우토지구 획정리지구)

1.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망우토지구 획정리지구내에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별첨 환지 확정지정도서와 같이 환지 확정처분이 되었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 확정 지정 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지 제 1 과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동지구내에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80,617.60 평) 에 대한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및 확정측량 시행시까지 이를 보류한다.

첨부: 도면 및 조서 (생략)

1974. 2. 9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대체지정

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4. 2. . . . 서울특별시장

변 경 전					변 경 후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471	희편물사	박준식	성동구 홍익동 398	혜타수편물	471	주식회사 하이혜손상사	박준식	성동구 홍익동 398	혜타수편물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 호
 쓰레기 특별 청소제외 (비수거) 지역공고
 오물청소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의 비수거지역을 지정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4. . . . 서울특별시장

구 및 출장소	동 명	통	구 및 출장소	동 명	통
동대문	망우동 신내동	전지역	천호출장소	암사동 방이동	전지역
성동	장안동	"	영동출장소	잠실동	"
도봉	공릉동 상계 1동 상계 2동 중계동 도봉동	" " " " "		일원동 세곡동 도곡동 내곡동 서호동	" " " " "
천호출장소	명일동 길동	" "		잠원동 양재동	" "
			계	23개 동	

사 령

© 1974.2.5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현재

조명순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진수

양서출장소 지방토목
기

이갑덕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진욱

정탁길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정금화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 1 급

강영수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수희

지방통신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방호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경상남도 지사에 보함.

경상북도지사 이사관

남문희

관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에 보함.

1974년 2월 5일

백윤희

대통령

<p>내 무 국 새마을지도과 지방서기관 문 무 봉</p> <p>서기관에 임함.</p> <p>2 호봉을 급함.</p>	<p>구의수원지사부소과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 내무국 새마을 지도과장에 포함.</p>	<p>◎ 1974.2.10</p> <p>전북고창군 지방행정 주사보 한 재 연</p>
<p>내무국시민과 지방서기관 한 상 건</p> <p>서기관에 임함.</p> <p>5 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장에 포함.</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6 호봉을 급함.</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1974년 2월 5일</p> <p>대 통 령</p>	<p>◎ 1974.2.15</p> <p>전 평 균 해 보 면 남 지방농림 기 원 윤 석 은</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 1974.2.6</p> <p>성 북 구 지방행정 사무관 고 경 현</p>	<p>지방농림기원에 임함.</p> <p>6 호봉을 급함.</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사무관 이 경 구</p> <p>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파면제 처함.</p>	<p>북부농지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경기도동부 지방농림 사방관리소 기사보 한 희 역</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p>
<p>은평출장소 지방농림 기사보 용 환 운</p> <p>농지과파견 근무를 명함.</p>	<p>6 호봉을 급함.</p> <p>북부농지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관 악 구 지방토목 기사보 김 중 질</p>	<p>경기도파주군 지방농림 기사보 윤 국 군</p>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9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산림청
농부영림서
인제관리소
농림기사보

이 계 형

경남울산시 지방행정
주 박 무 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입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3 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근무를

경기도 지방보건
가평군보건소 기사보

백 봉 규 명함.

서울특별시 장